

전국소년체육대회 입상선수 포상금 지급 내부지침(안)

제1조(목적)

이 지침은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선수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선수의 사기 진작과 경기력 향상 및 지역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근거)

이 지침은 「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전국체육대회 입상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」 제7조(보칙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포상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

제3조(적용대상)

- ①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학생선수로 한다
- ② 교육청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포상금을 지급받는 선수 중(타 시·도에서 이적한 선수)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선수만 지급한다.
- ③ 본 지침의 적용 대상은 회원종목단체에 등록된 학생선수로 한다.

제4조(지급기준)

- ① 포상금은 전국체육대회 입상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의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한다.
- ② 다만, 예산 범위 내에서 체육회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5조(지급방법)

- ① 포상금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.
- ② 포상금 지급 시 학생 확인 절차를 거친다.
- ③ 포상금 지급 관련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포상금 지급대상자 명단
2. 입상 증빙자료
3. 기타 필요한 서류

제6조(기타사항)

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체육회장의 결정에 따른다.

부칙

- ① 본 지침은 2026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.